

무배당새로나은암보험

'95. 3. 1 판매

'97. 4. 1 변경판매

고려생명보험주식회사

무배당 세로나온 암보험 약관

부배당새로나온 암보험

제 1조 (보험계약의 성립)

(1)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 집니다.

(2)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 1회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撤回)할 수 있습니다.

(이하 보험계약은"계약", 보험계약자는"계약자", 보험회사는"회사"라 합니다)

(3)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 1회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 (이하 "부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 (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제 2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보험의 피보험자는 개인계약에 있어서는 주피보험자만으로 하고, 가족계약에 있어서는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로 구성됩니다.

이 경우,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는 다음에 정하는 자로 합니다.

(이하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를 합하여 "피보험자"라 합니다)

1. 개인계약에 있어서는 보험증권상에 기재된 자를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가족계약에 있어서는 보험증권상에 기재된 자를 주피보험자로 하고, 주피보험자와의 호적상의 관계가 다음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종피보험자로 합니다.

가) 주피보험자의 배우자

나) 주피보험자의 만22세 이하의 미혼자녀

제 3조 (종피보험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

- (1) 이 보험계약의 계약일에 제 2조 제 2호에 해당되는 자는 그 계약일에 종피보험자로 됩니다.
- (2) 계약일의 다음날 이후에 제 2조 제 2호에 해당되게 된 자는 해당된 때에 종피보험자로 됩니다.
- (3) 계약일 이후에 제적 또는 만23세에 달하여 제 2조 제 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자는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날로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계약 체결시의 배우자가 사망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 (失蹤宣告)가 있거나 별표 3 (재해분류표) 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 라 합니다) 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하였거나, 별표 4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 (이하 "장해분류표" 라 합니다) 중 제 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새로 배우자로 된 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4조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1) 이 계약에 있어서 "암" 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별표 2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 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 별표 2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그 증상이 미미한 기저세포신생물 및 편평상피신생물 (basal cell carcinoma or squamous cell carcinoma) 은 상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2)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 4조의 2 ("상피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1) 이 계약에 있어서 "상피내암" 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별표 6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 을 말합니다.
- (2) 상피내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상피내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상피내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상피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 5조 (간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1) 이 계약에 있어서 "간질환 (간암은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간 관련 소화기계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 (별표 5 "간질환분류표" 참조) 을 말합니다.
- (2) 간질환의 진단확정은 대한민국내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을 가진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 6조 (계약의 효력)

- (1)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계약일로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 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계약일로 합니다.
- (2) 회사는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하 "책임 개시일" 이라 합니다) 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단, 암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 제10조 제 1항 제 10호 및 제 2항 에서 정하는 장애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3) 회사가 청약서에 제 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암, 상피내암 또는 간질환 입원여의의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4) 제2항에 불구하고 가족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일의 다음날 이후에 종피보험자가 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취급합니다.

1. 계약일의 다음날 이후에 주피보험자의 자녀로 출생하여 종피보험자가 된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책임개시일과 출생한 날중 늦은 날을 해당 피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2. 제1호의 경우 이외에 계약일의 다음날 이후에 제 3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종피보험자가 된 경우 암 또는 상피내암에 대하여는 종피보험자로 된 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해당 피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도 제 2항 후단의 조항을 준용합니다.

(5) 회사는 제 2항 내지 제 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1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6) 계약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7) 개인계약은 주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장애분류표중 제 1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가족계약은 주피보험자 및 배우자가 사망 또는 장애분류표중 제 1급의 장애상태가 되고 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로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6조의 2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한 자 (이하 "모집인등" 이라 합니다) 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영업국, 영업소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 (서류, 사진, 도화등 모든 안내자료 포함)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 7조 (계약 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1) 회사가 제1회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드리고,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2)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1항의 반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로, 회사가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 7조의 2 (약관교부 및 중요한 내용의 설명의무)

(1)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2) 계약자가 청약시까지 약관의 전달 및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 8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 (이하 "수익자"라 합니다)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익자를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동항 제3호 내지 제10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 8조의 2 (대표자의 지정)

(1)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제 1항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있는 곳이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3)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 (連帶) 로 합니다.

제 9조 (계약의 무효)

(1) 다음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1.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 또는 계약일로부터 암에 대한 해당 피보험자의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 또는 간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도르고 있었거나를 묻지 아니합니다)
2.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주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3.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 를 주피보험자 또는 배우자로 한 경우

(2) 그러나 제 1항 제 1호의 경우 계약일의 전일 이전에 해당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된 사실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3)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기간중에 제 2조에 정한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 또는 급여금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 을 지급합니다.

1. 주피보험자가 계약일로 부터 일정기간 경과한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건강관리자금 (단, 1종은 없음)
2.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때 까지 살아있을 때
: 만기급여금 (단, 1종은 없음)
3.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 6조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암치료보험금 지급 (단, 암 및 상피내암 각각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4.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 6조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또는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4일이상 계속입원 ("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하였을 때
: 암입원급여금 지급
5.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 6조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또는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입원하지 않고 통원하거나 또는 퇴원후 통원하였을 때
: 암통원급여금 지급

6. 주피보험자 또는 중피보험자가 제 6조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또는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목적 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 암수술급여금 지급

7. 주피보험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제 6조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간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간질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 간질환입원급여금 지급

8. 주피보험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제 6조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을 직접원인으로하여 사망 또는 장애분류표중 제 1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 암사망보험금 지급

9. 주피보험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암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또는 장애분류표중 제 1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 사망급여금 지급

10. 주피보험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장애분류표중 제 2 급 내지 제 6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 장애급여금 지급

(2) 개인계약의 경우에는 주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애분류표중 제 2급 내지 제 3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가족계약의 경우에는 주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애분류표중 제 1급 내지 제3 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에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험료 납입은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3) 제 1항 제 1호 및 제 2호의 경우 살아 있을때란 장애분류표중 제 1급의 장애 상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4) 제 1항 제 1호, 제 2호, 제 8호, 제 9호 및 제 2항의 경우 주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蹤宣告)가 있거나 별표3(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5) 제 1항 제10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2종목 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의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만 드립니다.

(6) 제 5항에 규정한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재해를 직접원인으로하여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장해급여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발생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금을 뺀 차액을 드립니다.

(7) 제 5항에 있어서 그 재해전에 이미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다시 제 6항의 규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해서는 이미 장해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 6항 후단(後段)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보험의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전호 이외에 이 보험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장해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8)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장해진단을 기준으로 장해상태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9)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 1항 제 9호, 제 10호 또는 제 2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10) 제 1항 제 7호 간질환입원급여금의 경우 입원급여금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11)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 상피내암 또는 간질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을 2회이상 한 경우에는 1회입원으로 보아서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고 간질환 입원의 경우 제 10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암, 상피내암 또는 간질환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12) 제 1항 제 4호 및 제 7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입원기간중 보험기간이 만료되거나 제 3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중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계속 암입원급여금 또는 간질환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13) 보험기간중 제 6조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제 1항 제 9호에 정한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제 1항 제 8호에 정한 암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암사망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사망급여금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단, 책임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11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 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이하 "의사" 라 합니다) 에 의하여 암, 상피내암 또는 간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3조 제 2항에 정한 병원, 의원 (한의원은 제외합니다)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2조 (배당금)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 (금리차보장금 포함) 이 없습니다.

제1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1)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또는 급여금을 드리지 아니하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 (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애분류표중 제1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암입원급여금, 간질환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3) 제 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 1항 제 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2. 제 1항 제 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 제 1항 제 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4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분류표중 제 1급 내지 제 6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2018. 2. 26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 또는 급여금을 감액하여 드리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 (가입자의 고지의무)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이하 "고지의무"라 합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 3조의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 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보험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건강진단서 사본 등) 에 의하여 승낙농지를 한 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승낙거절 직업 또는 직종은 제외)
5. 모집인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3) 제 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암진단 확정후 암진단확정과 인과 관계가 없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암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피보험자가 그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때에 한하여 그 때까지 발생한 암으로 인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이 경우 계약해지사 이미 지급한 금액은 공제합니다.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가입금액으로 감액하여 그 초과 가입액에 대한 보험료는 돌려드립니다.

(5) 제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드립니다.

제15조의 2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로 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지 아니하고 2년 (진단계약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부정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1년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보험료의 납입)

(1) 제 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간중 계약자가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단, 금융기관 (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2)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중 문서로 보험료의 납입방법,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제17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10조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8조 (주소변경통지)

(1)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제 1항의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사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9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1) 제 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일로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이하 "유예기간(猶豫期間)" 이라 합니다) 으로 하며, 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치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2)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 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수금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1항의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약은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다시 교부한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하여 제 1항을 적용합니다.

(3)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유예기간이 끝나기 10일 이전까지 제1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제20조 (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1) 계약이 효력상실 (效力喪失) 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효력상실일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 (復活) 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예정이율+1%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2)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 승낙거절시의 보험료 반환 및 고지의무는 제 1조 제 3항, 제 6조, 제 7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21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1)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급여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진단서 (암, 상피내암 또는 간질환 진단확정의 경우)
4. 입원증명서 (암, 상피내암 또는 간질환 입원의 경우)
5. 통원증명서 (암 또는 상피내암 통원의 경우)
6. 수술증명서 (암 또는 상피내암 수술의 경우)
7. 보험증권
8. 주민등록증 제시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9.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또는 급여금등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2)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22조 (보험금등의 지급)

(1) 회사는 제21조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보험금, 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급여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이내에 보험금, 급여금을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15조와 관련하여 의료기관등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4) 이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별표 "해약환급금 예시표" 참조)

(5) 회사는 2종의 경우 건강관리자금 및 만기급여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알려 드립니다.

(6) 건강관리자금, 만기급여금 및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23조 (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1) 계약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 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10조 제 1항 제 8호 및 제 9호의 규정에 의한 암사망보험금, 사망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2조 규정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에 다른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 +1%를 연단위 복리르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24조 (계약내용의 변경)

(1)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매서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가입금액
4. 계약자 또는 수익자
5. 기타 계약의 내용

(2) 제 1항 제 1호의 경우 변경후의 주피보험자와 변경전의 주피보험자는 동일하여야 하고, 개인계약에서 가족계약으로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종피보험자가 되는 자는 제 3조, 제 6조 및 제 9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계약일은 가족계약으로의 변경일로 합니다.

(3) 회사는 계약자가 제 1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2조 제 4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4) 계약자가 제 1항 제 4호중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5)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변경은 계약자가 사망, 파산, 이혼 또는 이혼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25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제26조 (약관대출)

- (1)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계약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 (3) 회사가 약관대출이자의 납입지연등을 이유로 약관대출 대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10일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6조의 2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26조의 3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일·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2. 계약일·보험종목
- 3. 보험가입금액,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의 금액 및 지급사유

제27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보험감독원장에게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보험보증기금의 지급보장)

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 아닌 계약에 대하여는 회사가 파산등으로 인하여 보험금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험보증기금이 1인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30조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별표)

해 약 환 급 금 예 시 표

기준 { 보험가입금액 : 10만원
 { 가입연령 { 15년만기 : 40세
 { 20년만기 : 40세
 { 80세만기 : 38세
 { 납입기간 : 전기납(80세만기는 55세납)
 { 납입방법 : 월납

◎ 1종 (순수보장형)

< 개인계약 >

구분		경과기간	1년	3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남 자	15년 만기	납입보험료	972	2,916	4,860	6,804	9,720	14,580	-
		해약환급금	0	386	1,391	2,116	2,288	0	-
	20년 만기	납입보험료	1,164	3,492	5,820	8,148	11,640	17,460	23,280
		해약환급금	0	978	2,466	3,762	4,995	5,241	0
	80세 만기	납입보험료	1,896	5,688	9,480	13,272	18,960	28,440	32,232
		해약환급금	341	3,162	6,526	10,074	15,615	26,584	35,098
여 자	15년 만기	납입보험료	780	2,340	3,900	5,460	7,800	11,700	-
		해약환급금	0	0	353	753	748	0	-
	20년 만기	납입보험료	828	2,484	4,140	5,796	8,280	12,420	16,560
		해약환급금	0	0	690	1,268	1,591	1,613	0
	80세 만기	납입보험료	1,224	3,672	6,120	8,568	12,240	18,360	20,808
		해약환급금	0	1,137	2,881	4,632	7,127	12,304	16,188

< 가족계약 >

구분		경과기간	1년	3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남	15년	납입보험료	1,284	3,852	6,420	8,988	12,840	19,260	-
	만기	해약환급금	0	670	1,798	2,597	2,760	0	-
자	20년	납입보험료	1,536	4,608	7,680	10,752	15,360	23,040	30,720
	만기	해약환급금	0	1,391	3,102	4,585	6,003	6,180	0
80세	납입보험료	2,484	7,452	12,420	17,388	24,840	37,260	42,228	
	만기	해약환급금	705	4,238	8,376	12,761	19,685	33,367	44,006
여	15년	납입보험료	1,428	4,284	7,140	9,996	14,280	21,420	-
	만기	해약환급금	0	642	1,727	2,464	2,585	0	-
자	20년	납입보험료	1,656	4,968	8,280	11,592	16,560	24,840	33,120
	만기	해약환급금	0	1,287	2,894	4,242	5,485	5,530	0
80세	납입보험료	2,424	7,272	12,120	16,968	24,240	36,360	41,208	
	만기	해약환급금	567	3,717	7,350	11,169	17,042	28,677	37,252

< 개인계약 >

구분		경과기간	1년	3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남 자	15년	납입보험료	3,024	9,072	15,120	21,168	30,240	45,360	-
		만기 해약환급금	555	6,069	9,541	13,203	19,881	34,693	-
	20년	납입보험료	2,856	8,568	14,280	19,992	28,560	42,840	57,120
		만기 해약환급금	425	5,613	8,701	11,911	17,749	30,565	41,120
	80세	납입보험료	2,988	8,964	14,940	20,916	29,880	44,820	50,796
		만기 해약환급금	588	6,205	9,883	13,828	21,173	38,046	47,821
여 자	15년	납입보험료	2,688	8,064	13,440	18,816	26,880	40,320	-
		만기 해약환급금	173	4,860	7,478	10,282	15,787	29,653	-
	20년	납입보험료	2,388	7,164	11,940	16,716	23,880	35,820	47,760
		만기 해약환급금	0	3,988	5,871	7,810	11,721	21,861	31,760
	80세	납입보험료	2,400	7,200	12,000	16,800	24,000	36,000	40,800
		만기 해약환급금	0	4,104	6,102	8,183	12,369	23,238	28,131

< 가족계약 >

구분		경과기간	1년	3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남 자	15년	납입보험료	3,672	11,016	18,360	25,704	36,720	55,080	-
		만기 해약환급금	1,028	7,505	12,030	16,845	25,473	44,413	-
	20년	납입보험료	3,444	10,332	17,220	24,108	34,440	51,660	68,880
		만기 해약환급금	842	6,847	10,815	14,968	22,354	38,243	52,880
	80세	납입보험료	3,528	10,584	17,640	24,696	35,280	52,920	59,976
		만기 해약환급금	971	7,333	11,816	16,627	25,389	45,008	57,003
여 자	15년	납입보험료	4,188	12,564	20,940	29,316	41,880	62,820	-
		만기 해약환급금	1,408	8,540	13,824	19,481	29,655	52,153	-
	20년	납입보험료	3,864	11,592	19,320	27,048	38,640	57,960	77,280
		만기 해약환급금	1,102	7,561	12,052	16,767	25,174	43,327	61,280
	80세	납입보험료	3,528	10,584	17,640	24,696	35,280	52,920	59,976
		만기 해약환급금	857	6,883	10,910	15,201	22,978	40,691	50,877

※ 상기 예시표는 가족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 및 배우자 동시생존시의 금액이며, 2종의 경우는 당해년도의 건강관리자금과 만기급여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1종 : 순수보장형

명칭	지급사유	지급액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피보험자 1인당>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가족계약의경우>
암치료보험금 (약관 제10조 제1항 제3호)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6조에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1,000만원	배우자 : 600만원 자녀 : 400만원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6조에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300만원	배우자 : 180만원 자녀 : 120만원
암입원급여금 (약관 제10조 제1항 제4호)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6조에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또는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4일이상 계속입원(재입원 일수를 포함 합니다) 하였을 때	3일을 초과하는 입원치료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만원	배우자 : 6만원 자녀 : 4만원
암통원급여금 (약관 제10조 제1항 제5호)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6조에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또는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입원하지 않고 통원하거나 또는 퇴원 후 통원하였을 때	1회의 통원에 대하여	
		5만원	배우자 : 3만원 자녀 : 2만원
암수술급여금 (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6조에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1회의 수술에 대하여	
		300만원	배우자 : 200만원 자녀 : 100만원
암사망보험금 (약관 제10조 제1항 제8호)	주피보험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제6조에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을 직접원인으로 사망 또는 장애분류표 중 제1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1회의 수술에 대하여	
		90만원	배우자 : 60만원 자녀 : 30만원
		1,500만원	배우자 : 900만원

명칭	지급사유	지급액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피보험자 1인당>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가족계약의 경우>
사망급여금 (약관 제10조 제1항 제9호)	주피보험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암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또는 장애분류표중 제1급의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	200만원 + 이미납입한 보험료 전액	배우자 : 120만원
간질환 입원급여금 (약관 제10조 제1항 제7호)	주피보험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제6조에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간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간질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4일이상 계속 입원(재입원일수를 포함합니다) 하였을 때	3일을 초과하는 입원치료일수에 대하여 1일당 2만원	배우자 : 1만원
장해급여금 (약관 제10조 제1항 제10호)	주피보험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장애분류표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	2급:700만원 3급:500만원 4급:300만원 5급:150만원 6급:100만원	배우자 : 2급:350만원 3급:250만원 4급:150만원 5급:75만원 6급:50만원

※ 암, 상피내암 및 간질환에 대한 계약상의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2종 : 건강관리자급형

명칭	지급사유	지급액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피보험자 1인당>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가족계약의 경우>
암치료보험금 (약관 제10조 제1항 제3호)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6조에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1,000만원	배우자 : 600만원 자녀 : 400만원
		단, 암치료보험금 지급은 1회에 한함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6조에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300만원	배우자 : 180만원 자녀 : 120만원
		단, 상피내암 치료보험금 지급은 1회에 한함	
암입원급여금 (약관 제10조 제1항 제4호)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6조에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또는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4일이상 계속입원(재입원 일수를 포함 합니다) 하였을 때	3일을 초과하는 입원치료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만원	배우자 : 6만원 자녀 : 4만원
암통원급여금 (약관 제10조 제1항 제5호)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6조에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또는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입원하지 않고 통원하거나 또는 퇴원 후 통원하였을 때	1회의 통원에 대하여	
		5만원	배우자 : 3만원 자녀 : 2만원
암수술급여금 (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6조에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1회의 수술에 대하여	
		300만원	배우자 : 200만원 자녀 : 100만원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6조에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1회의 수술에 대하여	
		90만원	배우자 : 60만원 자녀 : 30만원
암사망보험금 (약관 제10조 제1항 제8호)	주피보험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제6조에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을 직접원인으로 사망 또는 장애분류표 중 제1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1,500만원	배우자 : 900만원

명칭	지급사유	지급액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피보험자 1인당>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가족계약의 경우>
사망급여금 (약관 제10조 제1항 제9호)	주피보험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암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또는 장애분류표중 제1급의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	200만원 + 이미납입한 보험료 전액	배우자 : 120만원
간질환 입원급여금 (약관 제10조 제1항 제7호)	주피보험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제6조에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간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간질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4일이상 계속 입원(재입원일수를 포함합니다) 하였을 때	3일을 초과하는 입원치료일수에 대하여 1일당 2만원	배우자 : 1만원
장애급여금 (약관 제10조 제1항 제10호)	주피보험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장애분류표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2급:700만원 3급:500만원 4급:300만원 5급:150만원 6급:100만원	배우자 : 2급:350만원 3급:250만원 4급:150만원 5급:75만원 6급:50만원
건강관리자금 (약관 제10조 제1항 제1호)	주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매 3년마다 계약해당일에 생존시 (단, 장애분류표중 제1급의 장애상태 제외)	40만원	-
만기급여금 (약관 제10조 제1항 제2호)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존시 (단, 장애분류표중 제1급의 장애상태 제외)	이미납입한 보험료전액 - 이미지급한 건강관리자금 전액	-

※ 암, 상피내암 및 간질환에 대한 계약상의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별표 2)

악성신생물 분류표

약관 제 4조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 악성신생물	분류번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C00 ~ C14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C15 ~ C26
3. 호흡기 및 흉곽내 장기의 악성신생물	C30 ~ C39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0 ~ C41
5. 흑색종 및 피부의 기타 악성신생물	C43 ~ C44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C45 ~ C49
7. 유방의 악성신생물	C50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51 ~ C58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60 ~ C63
10. 요로의 악성신생물	C64 ~ C68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 부위의 악성신생물	C69 ~ C72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물	C73 ~ C75
13. 불명확한, 속발성 및 상세불명부위의 악성신생물	C76 ~ C80
14.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C81 ~ C96
15. 독립된 (원발성) 다발성 부위의 악성신생물	C97

제 4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상기질병이외에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3)

재 해 분 류 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 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1.1시행)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

분 류 항 목	분 류 번 호
1. 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인	V01 - V09
2. 운수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V10 - V19
3. 운수사고에서 다친 모터싸이클 탑승자	V20 - V29
4. 운수사고에서 다친 삼륜자동차량의 탑승자	V30 - V39
5. 운수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V40 - V49
6. 운수사고에서 다친 픽업 트럭 또는 밴 탑승자	V50 - V59
7. 운수사고에서 다친 대형화물차 탑승자	V60 - V69
8. 운수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V70 - V79
9. 기타 육상운수 사고(철도사고 포함)	V80 - V89
10. 수상 운수사고	V90 - V94
11. 항공 및 우주 운수사고	V95 - V97
1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수사고	V98 - V99
13. 추락	W00 - W19
14.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20 - W49
15. 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50 - W64
16. 불의의 익수	W65 - W74

분 류 항 목	분 류 번 호
17.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	W75 - W84
18. 전류, 방사선 및 극순환 기온 및 압력에 노출	W85 - W99
19. 연기, 불 및 화염에 노출	X00 - X09
20. 열 및 가열된 물질과의 접촉	X10 - X19
21.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의 접촉	X20 - X29
22. 자연의 힘에 노출	X30 - X39
23. 유독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X40 - X49
2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	X58 - X59
25. 가해	X85 - Y09
26. 의도 미확인 사건	Y10 - Y34
27. 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Y35 - Y36
28.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약제 및 생물학 물질	Y40 - Y59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Y60 - Y69
30.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에 의한 부작용	Y70 - Y82
31.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 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	Y83 - Y84
32.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종에 규정한 질병	

* 다음사항은 재해관련급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의용약 또는 약물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L23.3)
-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A00~R99에 분류가 가능한 것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익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및 삼킴장애
- "기타 불의의 사고"중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 "법적 개입"중 처형 (Y35.5)

(별표 4)

장애등급분류표

등 급	신 체 장 해
제 1 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두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 2 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2.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3.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4.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5.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7까지중의 신체장애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7까지중 또는 제 4급의 5부터 11까지 중에서 신체장애가 발생되었을 때6. 두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등 급	신 체 장 해
제 3 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팔의 3대 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5.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심한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 4 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을 때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다리가 영구히 5cm 이상 단축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중 적어도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등 피	신 체 장 해
제 4 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0. 한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한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14. 한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15.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 5 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때 2.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1. 두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등 급	신 체 장 해
제 5 급	12. 한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13.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14. 척추에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 6 급	1. 한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다리가 영구히 3cm 이상 단축되었을 때 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장애등급분류해설>

1. " 항상간호 "

항상 타인의 간호 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고도의 치매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 수시간호 "

" 수시간호 "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가.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 나. 정신장애로 인하여 자택밖의 행동이 곤란하여 수시로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 다. 심장,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 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3. "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

음식물섭취, 배변·배뇨, 거동·보행 또는 목욕등을 하는데 있어 평생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 또는 정신장애로 인하여 생활적응능력이 떨어져 평생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 시력을 잃은 것 "

시력이 0.02 이하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 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5. " 시력의 뚜렷한 장애 "

시력이 0.06 이하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 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6. "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

 - 가. " 말의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 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애로서 구순음 (ㄱ, ㄴ, ㅁ), 치설음 (ㄷ, ㅌ, ㄴ), 구개음 (ㅈ, ㅊ), 후두음 (ㅇ, ㅎ) 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않는 경우
 -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 나. "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

물이나 유동식 (미음 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7. "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애 "

- 가. "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긴 것 "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애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나. "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긴 것 "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써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8. "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

주파수 500, 1000, 2000, 4000 헬스의 경우에 청력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 데시벨 (청력검사단위)로 했을 때 $1/6(a+2b+2c+d)$ 의 값이 80 데시벨 (청력검사단위) 이상 (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 " 청력의 뚜렷한 장애 "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 데시벨 (청력검사단위) 이상 (40cm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독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 코의 결손과 뚜렷한 장애 "

코뼈가 결손된 경우로서 양코로 숨쉬는 것이 곤란하거나 또는 후각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1. "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운동 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 (팔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 다리는 골반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장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수 없는 경우(인공관절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12. "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애 "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와 보행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동요관절의 경우를 말한다.

13. "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 "

- 가. " 척추의 뚜렷한 기형 "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 나. " 척추의 심한 운동장애 "
목뼈 또는 가슴등뼈이하가 전후 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운동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애 "
목뼈 또는 가슴등뼈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 굽히기 및 좌우 회전운동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라. " 척추의 운동장애 "

목뼈 또는 가슴동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 굽히기 및 좌우 회전운동중 2종류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3/4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14. " 손가락의 장애 "

가. " 손가락을 잃은 것 "

첫째손가락은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

손가락의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첫째손가락은 말절골(끝에서 첫째 마디)의 1/2]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중수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첫째손가락은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이 완전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5. " 발가락의 장애 "

가. " 발가락을 잃은 것 "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 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

첫째발가락은 말절골(끝에서 첫째 마디)의 1/2 이상, 그의 발가락은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이상을 잃은 경우거나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첫째발가락은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이 완전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6. 신체의 동일부위

가. 한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이하 (손가락, 손목이하, 팔꿈치이하, 어깨이하) 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나. 한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이하 (발가락, 발목이하, 무릎이하, 골반이하) 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애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 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애등급분류표중 제 1급의 5,6,7,8,9, 제 2급의 3,4,5 제 3급의 8 또는 제 4급의 12의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 두다리, 한팔과 한다리, 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별표 5)

간질환분류표

분 류 항 목	분 류 번 호
1. 알콜성 간질환	K70
2. 독성 간질환	K71
3. 달리 분류 되지 않은 간부전	K72
4. 달리 분류 되지 않은 만성 감염	K73
5. 간의 섬유증 및 경변	K74
6. 기타 염증성 간질환	K75
7. 간의 기타 질환	K76
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간장애	K77*
9. 담석증	K80
10. 담낭염	K81
11. 담낭의 기타 질환	K82
12. 담도의 기타 질환	K83
13.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담낭 및 담도 장애	K87.0*
14. 바이러스성 감염	B15 ~ B19
15. 아메바성 간농양	A06.4

(별표 6)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 제8조 3에 규정하는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1993-3호 1995,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분 류 번 호
1. 구강, 식도 및 위의 상피내 암종	D00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상피내 암종	D01
3. 중이 및 호흡기계의 상피내 암종	D02
4. 상피내의 흑색증	D03
5. 피부의 상피내 암종	D04
6. 유방의 상피내 암종	D05
7. 자궁경관의 상피내 암종	D06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내의 상피내 암종	D07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상피내 암종	D08

D09

제4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상기 질병이외에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첨 A)

무배당 예정 암사망율

(남자)

연 령	무배당 예정 암사망율	연 령	무배당 예정 암사망율
0	0.000128	40	0.000490
1	0.000107	41	0.000560
2	0.000085	42	0.000630
3	0.000073	43	0.000777
4	0.000069	44	0.000925
5	0.000066	45	0.001073
6	0.000062	46	0.001221
7	0.000058	47	0.001368
8	0.000059	48	0.001636
9	0.000061	49	0.001904
10	0.000062	50	0.002173
11	0.000064	51	0.002441
12	0.000065	52	0.002710
13	0.000065	53	0.003225
14	0.000065	54	0.003740
15	0.000066	55	0.004256
16	0.000066	56	0.004771
17	0.000066	57	0.005286
18	0.000072	58	0.006247
19	0.000077	59	0.007209
20	0.000082	60	0.008170
21	0.000088	61	0.009132
22	0.000094	62	0.010092
23	0.000096	63	0.011206
24	0.000098	64	0.012319
25	0.000100	65	0.013432
26	0.000103	66	0.014545
27	0.000105	67	0.015659
28	0.000114	68	0.016669
29	0.000122	69	0.017679
30	0.000130	70	0.018689
31	0.000138	71	0.019699
32	0.000147	72	0.020709
33	0.000174	73	0.021738
34	0.000200	74	0.022766
35	0.000226	75	0.023796
36	0.000252	76	0.024825
37	0.000279	77	0.025853
38	0.000350	78	0.026596
39	0.000419	79	0.027339
		80	0.028082
		81	0.028825
		82	0.029569

(역자)

연 령	무 배당 예정 암사량률	연 령	무 배당 예정 암사량률
0	0.000048	40	0.000436
1	0.000053	41	0.000469
2	0.000058	42	0.000502
3	0.000057	43	0.000559
4	0.000052	44	0.000617
5	0.000047	45	0.000674
6	0.000042	46	0.000732
7	0.000036	47	0.000789
8	0.000037	48	0.000864
9	0.000038	49	0.000937
10	0.000038	50	0.001012
11	0.000039	51	0.001085
12	0.000040	52	0.001160
13	0.000041	53	0.001320
14	0.000043	54	0.001481
15	0.000044	55	0.001641
16	0.000046	56	0.001802
17	0.000047	57	0.001962
18	0.000047	58	0.002212
19	0.000048	59	0.002463
20	0.000050	60	0.002712
21	0.000051	61	0.002962
22	0.000052	62	0.003213
23	0.000067	63	0.003504
24	0.000081	64	0.003795
25	0.000096	65	0.004087
26	0.000110	66	0.004378
27	0.000125	67	0.004669
28	0.000141	68	0.005008
29	0.000159	69	0.005348
30	0.000176	70	0.005687
31	0.000194	71	0.006026
32	0.000210	72	0.006365
33	0.000235	73	0.006706
34	0.000262	74	0.007046
35	0.000287	75	0.007388
36	0.000313	76	0.007728
37	0.000338	77	0.008069
38	0.000370	78	0.008419
39	0.000403	79	0.008768
		80	0.009118
		81	0.009467
		82	0.009817

(별첨 B)

무배당 예정 압발생율

(남자)

연 령	무배당 예정 압발생율	연 령	무배당 예정 압발생율
0	0.000463	40	0.001174
1	0.000356	41	0.001312
2	0.000248	42	0.001451
3	0.000184	43	0.001720
4	0.000162	44	0.001990
5	0.000140	45	0.002260
6	0.000119	46	0.002530
7	0.000097	47	0.002799
8	0.000097	48	0.003264
9	0.000097	49	0.003728
10	0.000098	50	0.004191
11	0.000098	51	0.004655
12	0.000098	52	0.005119
13	0.000098	53	0.005909
14	0.000098	54	0.006699
15	0.000099	55	0.007488
16	0.000099	56	0.008278
17	0.000099	57	0.009068
18	0.000106	58	0.009915
19	0.000114	59	0.010761
20	0.000120	60	0.011608
21	0.000128	61	0.012454
22	0.000135	62	0.013301
23	0.000154	63	0.014578
24	0.000173	64	0.015855
25	0.000192	65	0.017131
26	0.000211	66	0.018408
27	0.000230	67	0.019685
28	0.000266	68	0.021267
29	0.000301	69	0.022848
30	0.000335	70	0.024429
31	0.000371	71	0.026010
32	0.000406	72	0.027591
33	0.000477	73	0.027536
34	0.000547	74	0.027482
35	0.000618	75	0.027426
36	0.000689	76	0.027372
37	0.000759	77	0.027316
38	0.000898	78	0.027261
39	0.001036	79	0.027207
		80	0.027151
		81	0.027097
		82	0.027041

(여차)

연 령	무배당 예정 압발생율	연 령	무배당 예정 압발생율
0	0.000375	40	0.001731
1	0.000289	41	0.001848
2	0.000204	42	0.001965
3	0.000151	43	0.002068
4	0.000131	44	0.002172
5	0.000111	45	0.002276
6	0.000091	46	0.002380
7	0.000071	47	0.002483
8	0.000073	48	0.002600
9	0.000074	49	0.002718
10	0.000075	50	0.002835
11	0.000076	51	0.002952
12	0.000078	52	0.003069
13	0.000083	53	0.003287
14	0.000087	54	0.003506
15	0.000093	55	0.003724
16	0.000098	56	0.003942
17	0.000102	57	0.004160
18	0.000123	58	0.004486
19	0.000143	59	0.004812
20	0.000163	60	0.005138
21	0.000183	61	0.005464
22	0.000204	62	0.005790
23	0.000252	63	0.006208
24	0.000301	64	0.006626
25	0.000349	65	0.007043
26	0.000397	66	0.007460
27	0.000446	67	0.007878
28	0.000540	68	0.008183
29	0.000634	69	0.008487
30	0.000727	70	0.008791
31	0.000821	71	0.009096
32	0.000915	72	0.009400
33	0.001008	73	0.009463
34	0.001101	74	0.009528
35	0.001195	75	0.009591
36	0.001288	76	0.009655
37	0.001381	77	0.009718
38	0.001497	78	0.009782
39	0.001615	79	0.009846
		80	0.009909
		81	0.009973
		82	0.010037

(별첨 C)

무배당 예정 압입원율

(남자)

연 령	무배당 예정 압입원율	연 령	무배당 예정 압입원율
0	0.000435	40	0.001101
1	0.000334	41	0.001231
2	0.000233	42	0.001361
3	0.000173	43	0.001613
4	0.000152	44	0.001867
5	0.000132	45	0.002119
6	0.000112	46	0.002373
7	0.000092	47	0.002626
8	0.000092	48	0.003061
9	0.000092	49	0.003497
10	0.000093	50	0.003931
11	0.000093	51	0.004367
12	0.000093	52	0.004802
13	0.000093	53	0.005542
14	0.000093	54	0.006284
15	0.000094	55	0.007024
16	0.000094	56	0.007765
17	0.000094	57	0.008505
18	0.000097	58	0.009300
19	0.000107	59	0.010093
20	0.000113	60	0.010888
21	0.000120	61	0.011683
22	0.000126	62	0.012477
23	0.000144	63	0.013675
24	0.000162	64	0.014873
25	0.000181	65	0.016069
26	0.000198	66	0.017267
27	0.000216	67	0.018465
28	0.000249	68	0.019948
29	0.000282	69	0.021431
30	0.000314	70	0.022914
31	0.000348	71	0.024398
32	0.000381	72	0.025881
33	0.000447	73	0.025828
34	0.000513	74	0.025778
35	0.000580	75	0.025726
36	0.000646	76	0.025675
37	0.000712	77	0.025623
38	0.000842	78	0.025571
39	0.000972	79	0.025520
		80	0.025467
		81	0.025417
		82	0.025365

(여자)

연 령	무배당 예정 가입원액	연 령	무배당 예정 가입원액
0	0.000352	40	0.001624
1	0.000272	41	0.001734
2	0.000191	42	0.001843
3	0.000141	43	0.001940
4	0.000123	44	0.002037
5	0.000104	45	0.002134
6	0.000086	46	0.002232
7	0.000066	47	0.002330
8	0.000068	48	0.002439
9	0.000069	49	0.002549
10	0.000071	50	0.002659
11	0.000072	51	0.002769
12	0.000074	52	0.002880
13	0.000077	53	0.003083
14	0.000082	54	0.003288
15	0.000087	55	0.003493
16	0.000091	56	0.003698
17	0.000096	57	0.003902
18	0.000115	58	0.004208
19	0.000134	59	0.004513
20	0.000153	60	0.004820
21	0.000172	61	0.005125
22	0.000191	62	0.005431
23	0.000236	63	0.005822
24	0.000282	64	0.006215
25	0.000328	65	0.006606
26	0.000373	66	0.006998
27	0.000418	67	0.007390
28	0.000506	68	0.007675
29	0.000595	69	0.007961
30	0.000682	70	0.008246
31	0.000770	71	0.008532
32	0.000858	72	0.008817
33	0.000946	73	0.008877
34	0.001033	74	0.008937
35	0.001121	75	0.008996
36	0.001208	76	0.009057
37	0.001296	77	0.009116
38	0.001404	78	0.009175
39	0.001515	79	0.009235
		80	0.009295
		81	0.009355
		82	0.009414

(별첨 D)

무배당 예정 압수순율

(남자)

연령	무배당 예정 압수순율	연령	무배당 예정 압수순율
0	0.000313	40	0.000793
1	0.000241	41	0.000886
2	0.000168	42	0.000980
3	0.000124	43	0.001162
4	0.000110	44	0.001345
5	0.000095	45	0.001527
6	0.000080	46	0.001710
7	0.000066	47	0.001892
8	0.000066	48	0.002205
9	0.000066	49	0.002519
10	0.000067	50	0.002832
11	0.000067	51	0.003146
12	0.000067	52	0.003459
13	0.000067	53	0.003993
14	0.000067	54	0.004527
15	0.000067	55	0.005060
16	0.000067	56	0.005594
17	0.000067	57	0.006128
18	0.000072	58	0.006700
19	0.000076	59	0.007272
20	0.000081	60	0.007844
21	0.000087	61	0.008416
22	0.000091	62	0.008988
23	0.000104	63	0.009852
24	0.000117	64	0.010714
25	0.000130	65	0.011577
26	0.000142	66	0.012439
27	0.000156	67	0.013302
28	0.000180	68	0.014371
29	0.000203	69	0.015439
30	0.000226	70	0.016508
31	0.000250	71	0.017576
32	0.000274	72	0.018645
33	0.000322	73	0.018607
34	0.000370	74	0.018571
35	0.000417	75	0.018533
36	0.000465	76	0.018496
37	0.000513	77	0.018459
38	0.000606	78	0.018422
39	0.000700	79	0.018384
		80	0.018347
		81	0.018311
		82	0.018273

(여자)

연 령	무배당 예정 압수율	연 령	무배당 예정 압수율
0	0.000253	40	0.001170
1	0.000195	41	0.001249
2	0.000138	42	0.001328
3	0.000101	43	0.001398
4	0.000088	44	0.001468
5	0.000074	45	0.001538
6	0.000061	46	0.001608
7	0.000047	47	0.001678
8	0.000049	48	0.001757
9	0.000049	49	0.001836
10	0.000051	50	0.001915
11	0.000051	51	0.001994
12	0.000053	52	0.002075
13	0.000056	53	0.002222
14	0.000060	54	0.002370
15	0.000063	55	0.002517
16	0.000063	56	0.002664
17	0.000069	57	0.002812
18	0.000083	58	0.003031
19	0.000097	59	0.003252
20	0.000110	60	0.003472
21	0.000124	61	0.003692
22	0.000138	62	0.003913
23	0.000170	63	0.004195
24	0.000203	64	0.004478
25	0.000235	65	0.004759
26	0.000269	66	0.005042
27	0.000302	67	0.005324
28	0.000365	68	0.005529
29	0.000428	69	0.005735
30	0.000491	70	0.005941
31	0.000555	71	0.006146
32	0.000618	72	0.006352
33	0.000681	73	0.006395
34	0.000744	74	0.006436
35	0.000808	75	0.006481
36	0.000870	76	0.006524
37	0.000933	77	0.006567
38	0.001012	78	0.006610
39	0.001091	79	0.006654
		80	0.006696
		81	0.006739
		82	0.006782

(별첨 E)

부패당 예정 압송원율

(남자)

연령	부패당 예정 압송원율	연령	부패당 예정 압송원율
0	0.000768	40	0.001946
1	0.000590	41	0.002176
2	0.000412	42	0.002405
3	0.000306	43	0.002852
4	0.000269	44	0.003300
5	0.000233	45	0.003746
6	0.000198	46	0.004195
7	0.000161	47	0.004641
8	0.000161	48	0.005411
9	0.000161	49	0.006179
10	0.000163	50	0.006948
11	0.000163	51	0.007717
12	0.000163	52	0.008487
13	0.000163	53	0.009796
14	0.000163	54	0.011106
15	0.000165	55	0.012413
16	0.000165	56	0.013724
17	0.000165	57	0.015032
18	0.000176	58	0.016437
19	0.000189	59	0.017839
20	0.000200	60	0.019244
21	0.000212	61	0.020647
22	0.000223	62	0.022052
23	0.000255	63	0.024168
24	0.000287	64	0.026286
25	0.000319	65	0.028401
26	0.000350	66	0.030518
27	0.000381	67	0.035634
28	0.000440	68	0.035257
29	0.000499	69	0.037878
30	0.000556	70	0.040499
31	0.000614	71	0.043120
32	0.000673	72	0.045742
33	0.000790	73	0.045649
34	0.000907	74	0.045560
35	0.001025	75	0.045468
36	0.001141	76	0.045378
37	0.001259	77	0.045286
38	0.001489	78	0.045194
39	0.001718	79	0.045104
		80	0.045011
		81	0.044922
		82	0.044830

(여자)

연 령	무배당 예정 압통원율	연 령	무배당 예정 압통원율
0	0.000622	40	0.002870
1	0.000480	41	0.003065
2	0.000338	42	0.003257
3	0.000250	43	0.003429
4	0.000218	44	0.003601
5	0.000184	45	0.003772
6	0.000152	46	0.003945
7	0.000117	47	0.004116
8	0.000120	48	0.004311
9	0.000122	49	0.004505
10	0.000125	50	0.004700
11	0.000127	51	0.004894
12	0.000129	52	0.005089
13	0.000137	53	0.005449
14	0.000145	54	0.005812
15	0.000154	55	0.006173
16	0.000162	56	0.006535
17	0.000169	57	0.006897
18	0.000204	58	0.007437
19	0.000237	59	0.007977
20	0.000270	60	0.008519
21	0.000304	61	0.009058
22	0.000338	62	0.009598
23	0.000418	63	0.010291
24	0.000498	64	0.010984
25	0.000579	65	0.011676
26	0.000659	66	0.012368
27	0.000739	67	0.013060
28	0.000895	68	0.013566
29	0.001051	69	0.014070
30	0.001205	70	0.014575
31	0.001361	71	0.015079
32	0.001517	72	0.015584
33	0.001672	73	0.015689
34	0.001825	74	0.015795
35	0.001981	75	0.015900
36	0.002135	76	0.016006
37	0.002290	77	0.016111
38	0.002482	78	0.016215
39	0.002677	79	0.016323
		80	0.016428
		81	0.016535
		82	0.016639